

정 관

제정 : 1984.3.26	13 차 개정 : 2000.3.17
1 차 개정 : 1986.2.18	14 차 개정 : 2001.3.16
2 차 개정 : 1988.5.12	15 차 개정 : 2002.3. 8
3 차 개정 : 1988.9.13	16 차 개정 : 2004.3.12
4 차 개정 : 1988.12.2	17 차 개정 : 2005.3.11
5 차 개정 : 1989.8.14	18 차 개정 : 2006.3.10
6 차 개정 : 1991.3.15	19 차 개정 : 2008.3.14
7 차 개정 : 1992.3.20	20 차 개정 : 2010.3.12
8 차 개정 : 1994.7.7	21 차 개정 : 2011.8.31
9 차 개정 : 1996.3.15	22 차 개정 : 2012.3.23
10 차 개정 : 1997.3.21	23 차 개정 : 2013.3.22
11 차 개정 : 1998.3.27	24 차 개정 : 2014.3.21
12 차 개정 : 1999.3.20	25 차 개정 : 2015.3.20
	26 차 개정 : 2016.3.18
	27 차 개정 : 2017.3.24

전문

회사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회사는 구성원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은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간다.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자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17. 3. 24. 전문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이 회사는 "SK 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며, 한글로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 SK Telecom Co., Ltd.로 표기한다. (1997. 3. 21 본 조 개정)

제 2 조(목적)①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2. 3. 20 본 항 개정)

②회사는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사업(2000. 3. 17 본 호 개정)
2. 단말기매매 및 임대업
3. 뉴미디어사업
4. 광고업
5. 통신판매업
6. 부동산업(개발, 관리, 임대 등) 및 동산 임대업(2010. 3. 12 본 호 개정)

7. 1 호내지 4 호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8. 1 호내지 4 호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9. 1 호내지 4 호관련 제조 및 유통업
10. 여행업(2006. 3. 10 본 호 개정)
11. 전자금융업(2008. 3. 14 본 호 개정)
12.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2008. 3. 14 본 호 신설)
13.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2010. 3. 12 본 호 신설)
14. 전기공사업(2010. 3. 12 본 호 신설)
15. 정보통신공사업(2010. 3. 12 본 호 신설)
16.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서비스업(2010. 3. 12 본 호 신설)
17. 국내외 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관리, 운영 등을 통한
관련사업(2011. 8. 31 본 호 신설)
18.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2013. 3. 22 본 호 신설)
19. 수출·입업 및 수출·입 중개·대행업(2015. 3. 20 본 호 신설)
20. 지능형전력망사업 등 전기사업(2016. 3. 18 본 호 개정)
20.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2016. 3. 18 본 호 개정)

③회사는 전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1989. 8. 14 본 항 신설)

제 3 조(본사 및 지사)회사의 주된 사업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 4 조(公告方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telecom.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4. 3. 21. 본 조 개정)

제 2 장 주 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 이천만주로 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제 6 조(1 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2000. 3. 17 본 조 개정)

제 7 조(주식및 주권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 백주권, 5 백주권, 1 천주권, 1 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1989. 8. 14 본 조 개정)

제 8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50 만주로 한다.(1997. 3. 21 본 항 개정)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 2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1997. 3. 21 본 항 개정)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1997. 3. 21 본 항 신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 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1997. 3. 21 본 항 개정)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1989. 8. 14 본 항 신설)

⑥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1997. 3. 21 본 항 신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1997. 3. 21 본 항 신설)

제 9 조(주권 불소지)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신주인수권)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1989. 8. 14 본 항 개정)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거나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결정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1989. 3. 20 본 항 개정)

제 10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996. 3. 15 본 조 신설)

제 10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①회사는 임직원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이하 본 조에서 “임직원”이라한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02. 3. 8 본 항 개정)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이윤극대화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2002. 3. 8 본 항 개정)

1. (2002. 3. 8 본 항 삭제)

2. (2002. 3. 8 본 항 삭제)

3. (2002. 3. 8 본 항 삭제)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2017. 3. 24 본 항 개정)

⑤ (2000. 3. 17 삭제)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 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2001. 3. 16 본 항 개정)

⑦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2000. 3. 17 본 항 개정)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 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000. 3. 17 본 호 개정)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000. 3. 17 본 호 개정)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0. 3. 17 본 호 개정)

제 10 조의 4(주식소각)①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주식매수기간과 방법 등 주식소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001. 3. 16 본 조 신설)

제 11 조(시가발행)①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989. 8. 14 본 항 개정)

②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 1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케 할 수 있다. (2012. 3. 23 본 항 개정)

제 12 조(명의개서 대리인)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1989. 8. 14 본 항 개정)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업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1989. 8. 14 본 항 개정)

③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 (1989. 8. 14 본 항 개정)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2012. 3. 23 본 항 개정)

제 13 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또는 서명신고)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 12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 3. 15 본 항 개정)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989. 8. 14 본 항 개정)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989. 8. 14 본 항 개정)

④전 각항의 등록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2001. 3. 16 본 항 개정)

②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총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2001. 3. 16 본 항 개정)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1989. 8. 14 본 항 신설)

제 3 장 사채

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996. 3. 15 본 항 개정)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액면 총액 중 3,00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1996. 3. 15 본 항 개정)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으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1996. 3. 15 본 항 개정)

제 16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1996. 3. 15 본 항 개정)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액면 총액 중 3,00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1996. 3. 15 본 항 개정)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으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1996. 3. 15 본 항 개정)

제 17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1996. 3. 15 본 조 개정)

제 17 조의 2(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23 본 조 신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주주총회의 구분)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정기총회는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의 3 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1994. 7. 7 본 항 개정)

제 19 조(소집)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1989. 8. 14 본 항 개정)

②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9. 8. 14 본 항 개정)

제 20 조(소집통지 및 공고)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2. 3. 8 본 항 개정)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13. 3. 22 본 항 개정)

제 21 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1989. 8. 14 본 조 개정)

제 22 조(의장)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1994. 7. 7 본 조 개정)

제 23 조(의장의 질서유지권)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8. 3. 27 본 항 개정)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1998. 3. 27 본 항 신설)

제 24 조(의결권)주주총회에서의 주주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주식 1 주마다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989. 8. 14 본 조 개정)

제 26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를 통일 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989. 8. 14 본 항 개정)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9. 8. 14 본 항 개정)

제 27 조(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대리인은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1994. 7. 7 본 항 개정)

제 28 조(의결사항)(1994. 7. 7 삭제)

제 29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1996. 3. 15 본 조 개정)

제 30 조(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와 지사에 비치한다. (1996. 3. 15 본 조 개정)

제 5 장 이사(2000. 3. 17 개정)

제 31 조(이사의 수)①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2 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둔다.(2005. 3. 11 본 항 개정)

②(2000. 3. 17 삭제)

제 32 조(이사의 선임)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

③이사 선임 시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 3. 20 본 항 신설)

④(1994. 7. 7 삭제)

⑤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한다. (1998. 3. 27 본 항 신설)

⑥(2000. 3. 17 삭제)

제 32 조의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①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00. 3. 17 본 조 신설)

제 32 조의 3(이사의 자격)①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동일인 및 그 동일인 관련자 (단, 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2000. 3. 17 본 호 개정)

2.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 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 직원 또는 최근 2 년이내에 임. 직원이었던 자

(2000. 3. 17 본 호 개정)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 대주주인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 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 직원 또는 최근 2 년이내에 임. 직원이었던 자.(2000. 3. 17 본 호 개정)

②회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2012. 3. 23 본 항 개정)

③회사의 사외이사가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사외이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제 33 조(이사의 임기)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2001. 3. 16 본 조 개정)

제 34 조(이사의 결원과 보선)①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2000. 3. 17 본 항 개정)

1. 사망한 때
2. 파산이 선고된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선고된 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②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 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0. 3. 17 본 항 개정)

③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제 35 조(이사의 직무)①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 인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994. 7. 7 본 항 개정)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4. 7. 7 본 항 개정)

제 35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0. 3. 17 본 조 개정)

제 35 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제 36 조(감사의 직무)(2000. 3. 17 삭제)

제 37 조(감사의 감사록)(2000. 3. 17 삭제)

제 38 조(임원의 결격사유)(1994. 7. 7 삭제)

제 39 조(직원의 신분보장)회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면직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
(1994. 7. 7 본 조 개정)

제 40 조(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1994. 7. 7 삭제)

제 41 조(대리인)대표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직원 중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994. 7. 7 본 조 개정)

제 42 조(고문 등)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1994. 7. 7 본 조 개정)

제 6 장 이사회

제 43 조(구성)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1994. 7. 7 본 조 개정)

제 44 조(이사회 소집)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994. 7. 7 본 항 개정)

②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2002. 3. 8 본 항 신설)

③이사회 소집은 회의개최 2 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2002. 3. 8 본 항 개정)

④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3. 8 본 항 개정)

제 45 조(이사회 의결방법)①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의 2(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정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8. 3. 27 본 조 신설)

1. 회사가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 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단일 또는 계속거래를 통하여 100 억원 이상의 출자, 자금대여, 보증, 자산취득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 46 조(기능)(1994. 7. 7 삭제)

제 46 조의 2(내부거래절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거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 개정한다.(1998. 3. 27 본 조 신설)

제 47 조(운영)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47 조의 2(감사협의회)(2000. 3. 17 삭제)

제 47 조의 3(감사위원회)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12. 3. 23 본 항 개정)

(2000. 3. 17 본 조 신설)

제 48 조(이사회 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제 49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

제 49 조의 2(사외이사의 처우)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 3. 17 본 항 개정)

제 7 장 계산

제 50 조(사업년도)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988. 8. 14 본 조 개정)

제 51 조(금고)(1994. 7. 7 삭제)

제 5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①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 3. 23 본 호 개정)

②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2012. 3. 23 본 항 신설)

③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 3. 23 본 항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사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2. 3. 23 본 항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2012. 3. 23 본 항 개정)

제 53 조(잉여금의 처분)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997. 3. 21 본 조 개정)

1.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순이익 배당 액의 10분의 1 이상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4 조(이익배당)①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1994. 7. 7 본 항 개정)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할 신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1996. 3. 15 본 항 신설)

③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지급한다.(1989. 8. 14 본 항 신설)

④제 1 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한 날로부터 5 년안에 그 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1989. 8. 14 본 항 개정)

제 54 조의 2(중간배당)①회사는 사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6 월 30 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배당금의 지급 시기 등 제반 관련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2012. 3. 23 본 항 개정)

③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④제 10 조의 2 및 제 54 조의 제 4 항은 본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2004. 3. 12 본 조 신설)

제 8 장 보칙

제 55 조(비밀엄수의 의무)①회사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1998. 3. 27 본 항 개정)

②회사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경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998. 3. 27 본 항 신설)

부 칙<변경 제 5 호(1989. 8. 14)>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198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규)당 회사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3 조(규정 외 사항)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 <변경 제 6 호(1991. 3. 15)>

이 정관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7 호(1992. 3. 20)〉

이 정관은 199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8 호(1994. 7. 7)〉

이 정관은 199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9 호(1996. 3. 15)〉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의 2, 제 13 조, 제 17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5 조의 2, 제 36 조, 제 37 조, 제 48 조, 제 54 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변경 제 10 호(1997. 3. 21)〉

이 정관은 199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11 호(1998. 3. 27)〉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 31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부구하고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3 인 이하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부 칙 <변경 제 12 호(1999. 3. 20)>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1999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신주발행)회사는 1999 년 6 월 17 일까지 보통주식 160,210 주를
발행한다.

제 3 조(신주발행 방법 등)부칙 제 2 조의 신주발행 시 회사는 본문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6 조 제 3 호에 따라
일정한도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에게만 그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다만, 그
발행가액, 인수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4 조(경과규정)본문 제 32 조 제 3 항의 규정은 2003 년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00. 3.17 본 조 개정)

부 칙 <변경 제 13 호(2000. 3. 17)>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31 조의 개정규정은 2000 사업년도 종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신주의 제 3 자 배정)본문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00년 내에 신주 579,492 주(액면가 5천원 기준)를 1 회 또는 수회 분할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 3 자 배정방식으로 포항종합제철(주)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변경 제 14 호(2001. 3. 16)>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이사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제 33 조의 규정은 본 정관 시행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 칙 <변경 제 15 호(2004. 3. 12)>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16 호(2005. 3. 11)>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17 호(2006. 3. 10)>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18 호(2008. 3. 14)>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8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19 호(2010. 3. 12)>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0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0 호(2011. 8. 31)>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1 호(2012. 3. 23)>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의 2, 제 52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2 항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2 호(2013. 3. 22)>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3 호(2014. 3. 21)>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4 호(2015. 3. 20)>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5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5 호(2016. 3. 18)>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65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제 26 호(2017. 3. 24)>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